

정책보고서 2002-24

家庭暴力·性暴力 相談所 및 保護施設의  
機能·役割 強化方案

金勝權  
曹愛姐  
金柔敬  
金延修

女 性 部  
韓國保健社會研究院

# 要 約

## 第 1 章 序論

### 1. 研究의 目的

- 본 연구의 목적은 가정폭력·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개별적인 운영에서 오는 시설 및 인력 등 서비스 자원의 비효율성을 최소화하고 상담소 및 보호시설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서비스의 효과를 최대화하는데 있음.
  - － 보다 구체적으로는 가정폭력·성폭력 상담소와 보호시설의 통합 운영을 위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통합을 위한 각종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.
  - － 가정폭력·성폭력관련 유관기관과의 연계체계를 강화하여 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을 극대화하고, 아울러 가정폭력·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 인력의 자질향상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함을 주요 목적으로 함.

### 2. 研究內容 및 方法

- 본 연구는 전체 8개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서론을 제외하면 7개 핵심 영역임.
  - － 제2장은 가정폭력·성폭력관련 제 개념의 논의, 가정폭력·성폭력관련 국내·외 주요 선행연구를 검토함.
  - － 제3장은 가정폭력·성폭력관련 국내·외 정책동향을 논의하고

시사점을 도출함.

- 제4장은 최근 우리 사회에서 가정폭력·성폭력의 발생추이를 검토하고 특성을 논의하며, 아울러 이러한 발생추이 및 특성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살펴봄.
- 제5장은 가정폭력·성폭력 상담소의 분포 및 관리운영실태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함.
- 제6장은 가정폭력·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의 분포 및 관리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함으로써 개선방안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함.
- 제7장은 가정폭력·성폭력 전문상담원 교육의 현황 및 문제점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, 상담원 자질향상방안을 마련함.
- 제8장은 앞의 연구 결과를 근거로 가정폭력·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적정설치 및 기능강화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, 특히 상담소 통합방안, 상담원 자질향상방안 등을 제시함.

#### □ 研究方法

- 가정폭력·성폭력관련 국내·외의 각종 문헌을 검토하여 관련 이론 및 선행연구, 정책동향, 관련 법제도 등을 논의함.
- 상담소 및 보호시설과 종사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구진에 의하여 개발된 조사표에 기초하여 우편조사 방식으로 실시함.
- 상담소 및 보호시설 관련 기관 및 종사자에 대한 사례조사를 각 시·도별 1개소의 상담소 및 보호시설을 대상으로 연구진에 의하여 개발된 조사표에 의한 직접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함.
- 연구수행상의 효율성 증대와 연구결과의 활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정책자문회의 및 전문가회의를 개최함.

## 第 2 章 家庭暴力·性暴力 概念 및 先行研究 檢討

### 1. 家庭暴力 및 性暴力的 概念

#### □ 家庭暴力的 概念

- 「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」에 의하면, 가정폭력의 범위를 “신체적,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”라고 규정하여 신체적 폭력에 국한하지 않고 정신적 학대와 재산상의 손해 및 손괴를 포함하는 포괄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음.
  - ‘가정폭력행위자’는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 및 가족구성원인 공범을 의미하며, ‘가정폭력 피해자’는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함.

#### □ 性暴力的 概念

- 성폭력이란 성을 매개로 인간에게 가해지는 일련의 강제 및 통제 행위로서 신체적, 언어적, 정신적 폭력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임.
  - 「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」은 성폭력의 개념을 정하지 않고 성폭력범죄가 무엇인지를 죄명으로 열거하고 있음(제2조).
  - 성폭력범죄 유형은 크게 형법상의 죄, 성폭력특별법상의 죄 및 이들 죄에 관해 다른 법률에서 가중 처벌되는 죄 등으로 구분됨.

### 2. 主要 先行研究

#### □ 家庭暴力·性暴力 統合 先行研究

- 가정폭력·성폭력 서비스 전달체계 및 복지인력에 관한 연구는

최근에 관심을 갖는 분야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음.

- 김승권(1999)은 가정폭력·성폭력관련 여성긴급전화 「1366」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정책적 제안을 함으로써 여성긴급전화 「1366」의 전달체계의 기반을 구축함.
- 박경숙(2000)은 가정폭력·성폭력관련 특례(별)법에 근거하여 가정폭력·성폭력관련 정책을 관련법 내에서 조명하고 있으며, 상담소와 타 기관간의 연계에 초점을 맞추어 서비스전달체계의 효율화방안을 제시함.
- 신은주(2000)는 여성긴급전화 「1366」을 평가하고 가정폭력 서비스 전달체계 내에서의 새로운 역할모형을 제시함.
- 엄명용(2000)은 가정폭력 서비스 전달체계 내에서 보건 및 사회복지인력이 담당해야 할 서비스 영역을 도출하고 그 역할을 새롭게 정립함.
- 김승권(2000)은 여성긴급전화 「1366」의 발전방향 모색을 위하여 운영실태를 분석하고 기관자체의 평가를 실시하여 여성복지전달체계 상에서의 여성긴급전화 「1366」의 역할을 정립함.

#### □ 家庭暴力關聯 先行研究

- 가정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연구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(1992), 변화순 외(1993), 김재엽 외(1997), 김승권·조애저(1998), 한국여성개발원(1999, 2001) 등이 주요함.
- 김승권(1999)은 「가정폭력 발생원인의 이론과 실제」에서 가정폭력 발생원인과 관련한 주요 이론을 검토하고, 가정폭력의 발생원인을 기존 조사자료에 의하여 논의함으로써 이론적 타당성을 검증하였음.

- 백연옥(2000)은 ‘가정폭력 개입전략의 개발’ 연구에서 기존 가정폭력 개입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함.
- 엄명용의 연구(2000)에서는 보건 및 사회복지 전문인력이 담당해야할 서비스 영역과 그 역할을 규정함으로써 가정폭력 대응의 전반적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보건복지인력의 역할모형들을 제시함.
- 박경숙(2000)은 ‘가정폭력 감소를 위한 서비스 연계모델 개발’에서 가정폭력 신고율이 낮은 것은 법적 체계가 부적절하여 행위자처벌에 대한 대응이 부적절하고 피해여성에 대한 서비스체계의 대응이 미흡하기 때문이라 논의함.
- 박미은(1986)은 가정폭력피해여성을 위해 서비스를 연결, 조정하는 사례관리자가 필요하며 관련기관들간의 협조관계를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함.
- 김인숙(1998)도 관련서비스 주체들의 기능을 소개하면서 피해자보호시설을 중심으로 경찰, 법적 지원, 지역사회기관과의 연계 등을 제언함.
- 한국여성의 전화연합(1998, 1999)은 상담소를 이용하는 가정폭력피해여성들을 통해 서비스체계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가정폭력 관련법에 명시되어 있는 서비스 기관, 특히 경찰의 실제적인 역할을 촉구함.

□ 性暴力 關聯 先行研究

- 성폭력 분야의 연구는 1990년대 초에 성폭력이 사회여론화 되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, 성폭력특별법의 제정과 함께 주요 연구 분야로 대두되었음.
- 성폭력 분야의 주요 연구로는 한국여성개발원(1992, 1997), 이경자 외

(1992), 신혜수(1996), 이원숙(1998) 등의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음.

- 한국여성개발원(1992)은 성폭력피해여성을 위해 초기개입, 중점 지원, 사후관리의 3단계로 나누어 서비스 체제 확립을 제안하고 이를 위한 정책지원에 대해서 언급함.
- 이경자 외(1992)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요구되는 사회복지서비스의 기본방향을 다양한 전문영역의 개입, 전문화된 서비스의 지속적 제공, 적합한 프로그램의 개발, 효율적 서비스 조직체계와 운용전략의 수립 및 법적 규정 등 많은 정책을 제안함.
- 신혜수(1996)는 성폭력상담소를 중심으로 하는 관련 전문가들의 연계망에 대해 제안함.
- 한국여성개발원(1997)의 ‘성폭력상담의 실제’에서는 여성문제현황과 성폭력현황을 다각적으로 살펴보고, 여성상담시 중요한 사항과 개념 정립에 대한 내용을 상담의 사례들을 제시함.
- 이원숙(1998)은 성폭력 관련 서비스에 있어서의 지역사회서비스 연계체계에 대해 논의함.

### 第 3 章 家庭暴力·性暴力 關聯 國內·外 政策動向

#### 1. 國內 政策動向

##### 가. 家庭暴力·性暴力 關聯 政策變化의 推移

- 1980년대 진입하면서 가정폭력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었고, 특히 아내 학대가 가정문제가 아닌 사회문제라는 인식이 자리잡기 시작하였음.
  - 여성단체의 입법 활동을 통해서 성폭력에 대한 법적 뒷받침이 이루어졌으며, 1980년대 말부터 성폭력사건이 본격적으로 여론화 되었음.

- 1994년에는 『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』이 제정됨.
- 1990년대 중·후반은 성폭력관련 시책이 정착된 시기로 가정폭력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관련 시책이 개발된 시기임.
  - 1995년에 여성발전기본법에 가정폭력·성폭력예방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었으며, 1997년 말에는 「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」과 「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」이 제정됨.
  - 1998년에는 가정폭력 특별법이 시행되었고, 가정폭력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이 수립되었으며, 1999년에는 가정폭력방지방안대책을 수립하였음.
- 2001년 이후에는 가정폭력·성폭력관련 대응정책이 통합적으로 접근되고, 동 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여성부로 이관되었으며, 가정폭력·성폭력 근절 종합대책(안)이 마련됨.
  - 여성긴급전화 「1366」의 운영, 가정폭력·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확충 등 폭력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함.

나. 家庭暴力·性暴力 相談所·保護施設의 主要 業務 및 財政支援

- 가정폭력상담소와 성폭력상담소의 업무는 다음과 같이 요약됨.
  - 가정폭력상담소의 업무는 가정폭력을 신고 받거나 상담에 응하며, 가정폭력으로 정상적인 가정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기타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피해자에 대한 임시보호를 함.
  - 성폭력상담소는 성폭력피해를 신고 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에 응하며, 성폭력피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기타 사정으로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병원 또는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로 연계함.

- 특히 이들 상담소는 행위자에 대한 고소와 피해배상청구 등 사법처리절차에 관하여 대한변호사협회·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함.
  - 2002년(5월 현재) 가정폭력상담소 151개소, 성폭력상담소 100개소에 이르고 있으며 이 중 122개의 상담소에 대하여 정부지원을 하고 있음.
    - 가정폭력상담소는 2명의 종사자 인건비와 일부 운영비를 지원 받고 있음.
    - 성폭력상담소는 3명의 종사자 인건비와 일부 운영비 지원을 받고 있음.
-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과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의 업무는 다음과 같이 요약됨.
-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의 업무는 가정폭력상담소의 업무를 하거나 피해자를 임시 보호함. 다만,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한 보호는 할 수 없음.
  -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의 업무는 성폭력상담소의 업무를 하거나 성폭력 피해자를 임시 보호함.
  - 특히 이들 보호시설은 피해자의 신체적·정신적 안정회복과 사회복귀를 도우며 기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고 타 기관과의 연계를 실시함.
  - 2002년(5월 현재)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28개소,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 8개소(장애인피해자보호시설 1개소 포함)에 이르고 있음.
    -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은 입소자 1인당 연간 4,119,000원을 기준으로 입소정원에 따라 지원함.
    -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은 입소자 1인당 연간 4,437,000원을 기준으로 입소정원에 따라 지원하고 있으며 상담원 교통비

와 피해자 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음.

다. 被害 女性障礙人을 위한 支援政策

- 2001년에 장애인성폭력피해 전문상담소 7개소를 신설하였고, 여성 장애인을 위한 상담기능을 하는 성폭력상담소 16개소를 지정함.

라. 被害者 醫療支援體系

- 「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」 제18조에 따라 의료기관은 피해자본인·가족·친지 또는 상담소나 보호시설의 장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보건상담 및 지도, 치료, 각종 치료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함.
  - － 치료보호의 비용은 가정폭력행위자가 부담하며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을 때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한 후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함(제18조 제2항).
- 「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」 제3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국·공립병원·보건소 또는 민간의료시설을 성폭력 피해자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.
  - － 2002년도부터 의료비지원은 부담능력에 관계없이 전액 지원되며, 지원범위도 일반치료 및 정신과 치료비에서 진단서 발급비용으로까지 확대 지원하고 있음.
  - － 현재 성폭력피해여성을 위해 국립경찰병원 등 수도권지역 내 7개 의료기관을 ‘여성폭력긴급의료지원센터’로 위촉하여 운영 중에 있음.

마. 서비스 傳達體系

- 「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」에 근거하여 가정폭력·

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여성긴급전화 「1366」을 운영함.

- 전화권역(시·도)별로 설치·운영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1차 긴급 상담, 서비스 연계(의료기관, 상담기관, 법률구조기관, 보호시설 등), 종합정보 안내 등 위기개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임.
  - 여성부 신설을 계기로 운영방법이 개선되었는데, 3교대로 여성폭력 피해자에게 365일·24시간 상담 및 긴급구호를 제공함.
  - 장애여성도 이용할 수 있도록 상담요원에게 수화와 심화상담 교육을 실시하는 예산을 확보하였음.

□ 긴급보호 기능의 효과적 수행을 위하여 의료기관, 교육기관, 법률구조기관, 행정기관, 경찰과 검사 등과 유관기관별 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함.

- 폭력피해여성이 One-stop상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성폭력·가정폭력상담소 및 피해자보호시설, 경찰, 검찰, 법률구조기관, 112, 119,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기관 등 지역별 유관기관 간 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하고 있음.
- 지역협의체는 위기여성 긴급구조 및 공동대응, 상담기관간 연대 및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, 전문상담 프로그램 개발 협의 및 상호정보 교환 등의 기능을 하고 있음

## 2. 外國의 主要 政策動向

### 가. 英國

- 1956년 성범죄법을 제정하였고, 1996년 12월에는 성폭력 범죄자법 공포, 1997년 성희롱으로부터의 보호법을 제정하였음.
  - 여성청의 조직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을 담당하는 팀은

‘Violence Against Women Team’임.

- 주요 역할은 여성에 관한 모든 폭력을 줄이는 일이지만, 특히 강간, 스토키 범죄, 가정폭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.

□ 영국정부는 폭력을 경험하는 여성들이 가장 먼저 접근할 수 있는 곳이 핫라인 서비스라는 인식 하에 관련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24시간 운영함.

– England & Wales 지역에 관련기관간 약 200여 개의 가정폭력 포럼이 존재하고 있으며, 각 기관들의 연계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짐.

□ 쉼터는 가정에서 폭력으로부터 벗어날 필요가 있는 여성 및 아동에게 응급위기 숙박시설을 제공함.

– 보통 10가구 내외로 수용 가능하며, 가족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쉼터(부엌, 방 등 주거환경)가 증가하고 있음.

#### 나. 스웨덴

□ 1965년 부부간간을 범죄행위로 간주하고 이를 처벌하는 법률이 제정되었음.

– 1982년에는 신고 없이도 가정폭력범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되면서 가정폭력이 사회문제로 인식됨.

□ 사회복지서비스를 담당하는 중앙부서는 보건사회부(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Affairs)임.

– 사회서비스국(Social Service Division)에서 각종 가정폭력과 성폭력, 장애, 노인 등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음.

□ 현재 131개의 여성 긴급 쉼터(Local Women’s Emergency Shelters)가 있고, 이들 쉼터들은 일년에 약 14,000건의 전화를 받고 있으며, 대략 1,500여 명의 여성이 자녀들과 함께 쉼터에 머물고 있음.

- 쉼터는 국가 예산에서 기관지원금을 받고 있으며, 지역 쉼터는 자치지역의 지원을 받고 있는데 지역마다 다소 차이가 나고 있는 실정임.
  - 쉼터에는 여성폭력위기전화가 설치되어 있어 위기상황에 처한 여성들에게 다양한 도움이 되고 있음.
  - 읍살라 대학 내에 설립된 여성폭력위기센터가 전국적인 위기전화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만 각 쉼터도 지방에서 여성 위기전화(Hot-line)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.

#### 다. 오스트리아

- 1997년 가정폭력방지법(The Protection Against Violence Act)의 제정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해당 가정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임.
  - 행위자의 배우자, 파트너, 자녀, 친척뿐만 아니라 한 가정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는 동거인이나 다른 거주자들 모두 포함됨.
  - 가정폭력이 발생하면 경찰이 현장에 출동, 집안의 열쇠를 압수하고, 행위자 남편은 10일간 의무적으로 집을 나가야하는 접근 금지조항을 규정하고 있음.
- 여성과 아이들을 폭력으로부터 도울 수 있는 기관은 헬프라인(Help-Line), 지역별 쉼터들(Women's Shelter), 응급수용시설(Emergency Accommodation), 상담기관(Counselling Center), 그리고 각 지역에 설치된 9개의 Intervention Centers (각 자치구별 1개소, 비엔나 2개소) 등임.
  - 가정폭력 방지시스템에는 법제도, 정보센터, 핫라인, 쉼터 등이 조화를 이루며 적절히 연계되어 있음.
  - 기본적으로 가정폭력에 관해서 폭력을 행사한 사람이 그 책임

이 있다는 취지에 따라 모든 책임은 피해자가 아니라 행위자에게 묻고 있음.

## 第 4 章 家庭暴力·性暴力의 發生推移 및 特性

### 1. 家庭暴力의 發生推移 및 特性

#### 가. 家庭暴力의 發生推移

- 가정폭력발생률은 연구자에 따라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, 주요 실태조사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.
  - － 시설에 거주하는 1,200명에 대한 한국형사정책연구원(1992)의 조사결과는 가정폭력발생률이 28.4%로 제시됨.
  - － 전국 1,523명을 대상으로 한 김재엽(1998)의 조사결과는 부부폭력발생률이 31.4%로 제시됨.
  - － 전국 10,592가구를 대상으로 한 김승권 외(2000)의 조사결과는 가정폭력발생률이 30.0%, 그 중 부부폭력은 7.4%로 제시됨.
- 경찰청자료(2001)에 의하면, 1998년 7월 1일 「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」의 시행이후 경찰에 신고된 가정폭력 발생건수는 계속 증가추세를 보여 2000년 12,983건으로 나타났음.
  - － 가정폭력발생은 매우 많으나 실제로 경찰에 신고되는 경우는 대단히 적은 규모로 나타남.

#### 나. 家庭暴力의 特性

- 아내虐待 類型
  - － 최근 실태조사자료(김승권 외, 2000)에 의하면, 아내학대의 유

형 중 신체적 폭력은 30.8%, 정서적 학대는 66.9%, 그리고 방  
임 및 기타 학대는 2.3%로 정서적 학대의 비율이 가장 높았음.

□ 아내학대의 發生頻度

- 아내학대의 발생빈도는 2~3개월에 1회 발생하는 경우가 전체 피해자의 37.2%이었으며, 월 1회 이상 학대받는 부인은 43.3%나 되었음.
- 29세 이하의 행위자는 2~3개월에 1회 정도의 학대를 행사하고 있는 비율이 가장 높았음.

□ 아내학대의 加害者와 被害者 關係

- 연령별로는 가해남편과 피해부인 모두 40대에서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, 교육수준별로는 행위자와 피해자 모두 고등학교 학력자의 비율이 가장 높았음.
- 남편과 부인이 동일한 학력수준인 부부가 전체 아내학대 발생 가구의 64.6%로 가장 높았으나, 행위자인 남편보다 피해자인 부인의 학력수준이 높은 경우는 7.1%, 반대로 낮은 경우는 28.3%이었음.

□ 아내학대의 發生原因

- 한국형사정책연구원(1992)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아내학대의 원인은 남편의 가부장적 가치관, 성격적 결함, 부부관계 유지기술의 부족, 음주 등으로 나타났음.
- 한국가정법률상담소(1996)에 상담을 위해 내방한 가정폭력 피해여성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에 의하면, 남성의 성적 우월의식과 가부장적 의식구조 및 성장과정에서 형성된 행위자의 폭력적 성품이 근본적인 원인임을 보여주었음.
- 김승권 외(1998, 2000)의 조사결과에 의하면, 아내학대의 발생 원인은 남편의 '술버릇', '경제적 문제', 남편의 '자격지심 및

열등감', 부부간의 '성격차이' 외에도 남편의 오해, 의처증, 사소한 말다툼에 의한 확대 등이었음.

- 이는 아내학대가 기본적으로 개인의 병리적인 속성에 의해서 비롯된다는 정신병리학적 이론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임.

## 2. 性暴力의 發生推移 및 特性

### 가. 性暴力의 發生推移

- 성폭력의 발생규모를 정확히 알 수 있는 자료는 없음.
  -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1996년에 6.1%로 신고율이 실제 발생건수에 비하여 매우 낮은 실정임.
- 경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는 1991년 3,669건이 발생하였으나, 「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」이 시행된 1994년에 7,415건, 그리고 2000년 9,775건으로 10년 간 약 2.7배 증가하였음.
  - 이는 통계청이 추계한 여성인구수를 기준으로 볼 때 1만 명 중 4.2명에 해당됨.
  - 1998년에 성폭력특별법에 의한 성폭력범죄자로 검거된 1,931건 중 검거의 단서가 피해자의 신고에 의한 경우는 655건(33.9%)으로 나타나고 있음(한국여성개발원, 1999).
- 검찰에서 매년 발간하는 『범죄분석』의 시계열 분석결과에 의하면 지난 30년 간(1966년에서 1995년도까지) 성폭력 범죄는 1993년 이후로 2인 이상이 공모한 성폭력 범죄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.
  - 성폭력 범죄로 인해 신체적 피해를 입은 경우도 1993년 이후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.

- 10대 청소년에 의한 성폭력 범죄율은 1~2위를 유지하고 있으며, 다른 연령 대에 비해 청소년층의 성폭력 범죄율의 증가속도가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음.

## 나. 性暴力의 特性

### □ 性暴力의 類型

- 성폭력의 유형은 강간, 성추행, 강간미수, 성희롱 등임.
  - 한국성폭력상담소의 2001년 상담통계를 보면, 총 2,869건 중 성추행(40.9%)이 가장 많았으며, 강간(36.9%), 성희롱(14.7%) 등으로 나타남(전주여성의전화, 2002).
  - 대검찰청이 1999년에 발간한 『검찰연감』에서 나타난 가장 많이 기소된 성폭력범죄 유형은 ‘특수강간 등(제6조 제1항: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한 강간 등의 범죄)’이 35.6%로 다른 범죄유형에 비하여 월등히 많았음.
  - 대전YWCA성폭력상담소의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성폭력피해상담 총 24,788건 중 성희롱 및 음란전화(44.6%)가 많았고, 강간(33.5%), 성추행(21.9%)으로 나타나고 있음.
- 행위자와 피해자 관계 중심으로 유형을 나누면 친족, 직장관계, 연인, 부부, 모르는 관계에 의한 피해 등으로 구분함(전주여성의전화, 2002).

### □ 性暴力의 加害者와 被害者 關係

- 성폭력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는 타인(59.9%)이 가장 많았으며, 지인(7.8%), 이웃(3.2%), 친족(3.2%), 친구(0.8%), 직장관계(0.7%), 애인(0.5%)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.

- 따라서 지인, 이웃 등 아는 사람에 의한 범행도 적지 않은 비율(16.4%)을 차지하였음.

□ 性暴力의 發生原因

- 성폭력의 발생원인을 설명하는 이론은 개인주의적 접근과 사회구조적인 접근이 있음.
  - 성폭력에 대하여 개인주의적 접근은 성폭력 행위자의 특성에 초점을 두고 성폭력의 원인을 도출함.
  - 사회구조적 접근은 행위자 개인보다는 그 행위를 유발하는 구조적 요인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, 성폭력을 보다 포괄적인 폭력문화 안에서 이해하는 입장과 가부장적 성문화의 이데올로기로써 설명하려는 입장임.

## 第 5 章 家庭暴力·性暴力 相談所의 實態分析

### 1. 設置現況 및 一般特性

#### 가. 年度別 變化

- 가정폭력·성폭력 상담소는 지속적으로 증설되고 있으며, 2002년 현재 251개소에 달함.
  - 가정폭력상담소는 1998년에 25개소에서 2002년 151개소로, 성폭력상담소는 1995년 12개소에서 2002년 100개소로 큰 증가를 보였음.
  - 가정폭력·성폭력 상담소는 지역적으로 불균형적 분포를 이루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됨.
    - 이는 상담대상인구, 폭력발생건수 등 어느 것도 고려되지 않

은 것이며, 상담소의 설립이 신고제인 점의 부작용이라 사료됨.

#### 나. 地域別 變化

□ 가정폭력상담소 및 성폭력상담소의 분포는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였음.

－ 가정폭력상담소는 경기도가 24개소로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으며, 서울 22개소, 경북 21개소, 부산 14개소, 전북 10개소 등의 순이었고 대전은 2개소만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.

• 성폭력상담소는 경기도가 24개소로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으며, 전북 11개소, 서울 10개소, 경남 7개소, 대구와 강원이 각 6개소, 부산, 충남, 경북이 각 5개소이었으며, 대전, 전남, 제주가 각각 2개소로 상대적으로 상담소 수가 적었음.

－ 각 시·도별 상담소 수의 균형적 배치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시·도별 10~64세 여성인구수를 상담소 수로 나누어 상담소 1개소 당 여성인구수를 파악하였음.

• 전체 251개 가정폭력·성폭력 상담소 중 1개 상담소 당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10~64세 여성인구는 72,778명이었음.

• 시·도별로는 대전이 1개 상담소 당 140,540명으로 가장 많은 여성인구를 담당해야 되며, 그 다음은 서울로 126,441명, 대구 100,267명, 인천 99,918명 순이었다.

－ 상담소별로 보면, 가정폭력상담소는 대전이 1개 상담소당 10~64세 여성인구가 281,080명으로 가장 많았고, 가장 적은 여성인구 수를 담당해야하는 지역은 경북(48,099명)이었음.

• 성폭력상담소는 서울이 404,613명으로 1개 상담소 당 10~64세 여성인구 수가 가장 많았고, 가장 적은 여성 수를 담당해야 하는 지역은 전북(63,749명)이었음.

- 적절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각 지역별 서비스 대상 인구수를 감안한 상담소의 균형적인 설립 및 배치가 요구됨.

#### 다. 一般特性

##### □ 運營主體別 分布

- 가정폭력상담소의 운영주체는 사단법인이 35.3%로 가장 많았고, 개인 26.3%, 기타 21.8%의 순이었음.
- 성폭력상담소는 사단법인이 운영하는 비율이 58.1%이며, 개인 19.8%, 기타 17.4%이었음.

##### □ 設立年度

- 가정폭력상담소의 설립년도 분포는 65.6%는 1999~2000년, 18.3%는 1997~1998년, 10.7%는 2001~200년 기간에 설립되어 상담소수는 연도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임.
- 성폭력상담소는 1994년 이전에 설치된 비율이 3.6%로 낮았으나 1995년 이후에는 매년 23%~25%가 설립되어 연도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.

##### □ 運營期間

- 가정폭력상담소는 2~5년 미만이 67.2%, 성폭력상담소는 3~10년 미만이 51.2%로 성폭력상담소가 가정폭력상담소보다 장기간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남.
  - 운영기간은 가정폭력상담소는 평균 2.9년, 성폭력상담소는 3.7년으로 성폭력상담소의 운영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게 나타남.

□ 職員 및 相談員 分布

- 평균 직원 수는 가정폭력상담소 2.57명, 성폭력상담소는 3.23명이었음.
- 평균 상담원 수는 가정폭력상담소 2.29명, 성폭력상담소는 2.97명이었음.

□ 設置現況

- 가정폭력상담소는 평균 개별상담실 1.39개, 전화상담실 1.15개를 갖추고 있음.
- 성폭력상담소는 평균 개별상담실 1.14개와 전화상담실 1.14개로 모두 가정폭력상담소 보다 적게 갖추고 있었음.
  - 특히 약 5%의 상담소는 사무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사무실과 개별상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서 상담실이 갖추어야 할 기본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.

□ 運營主體의 運營期間

- 사회복지법인이 가장 길어 27.8년이었고, 사단법인이 가장 짧아 10.1년이었음.
  - 가정폭력상담소의 운영기간은 사회복지법인(29.6년), 그 다음은 재단법인(20.3년) 순으로 길게 나타났음.
  - 성폭력상담소는 기타법인(16.5년), 종교법인(10.4년) 순으로 운영기간이 길었음.

□ 運營主體 代表와 相談所 代表 同一與否

- 운영주체의 대표와 상담소 대표가 동일한 경우는 가정폭력상담

소가 26.0%, 성폭력상담소는 11.6%이었음.

- 사단법인의 경우에는 가정폭력상담소와 운영주체의 대표가 동일한 경우 25.5%, 성폭력상담소와 운영주체의 대표가 동일한 경우 10.0%이었음.
- 종교법인의 경우에는 가정폭력상담소 대표와 겸직한 경우가 57.1%로 상당히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, 기타법인의 경우에는 가정폭력상담소와 운영주체의 대표가 동일한 경우 32.1%, 성폭력상담소와 운영주체의 대표가 동일한 경우 20.0%이었음.

## 2. 運營現況 및 利用者 特性

### □ 職員 採用方法

- 가정폭력상담소는 제한적 공개채용이 62.5%, 공개채용이 23.4%이며, 4.7%만이 비공개 채용으로 이루어지고 있음.
- 성폭력상담소는 제한적 공개채용 50.0%, 공개채용 36.9%로 공개채용률은 가정폭력상담소 보다 13.5%포인트 높았음.

### □ 相談人力 및 豫算의 充分程度

- 상담인력이 부적절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가정폭력상담소는 64.9%, 성폭력상담소는 51.2%로 나타나서 상당수의 상담소가 상담인력의 부족을 지적하였음.
- 예산의 부족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가정폭력상담소는 96.2%, 성폭력상담소는 94.0%가 예산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음.
  - 전체 예산비목 중 가장 부족한 부분이 인건비인 비율은 가정폭력상담소는 71.3%, 성폭력상담소는 48.1%이었음.

□ 運營主體와 相談所間의 會計帳簿 分離與否

- 상담소의 재무회계는 법인회계와는 별도로 구분하여 독립채산체로 운영하여야 함에도 가정폭력상담소의 14.7%, 성폭력상담소의 8.7%가 운영주체와 회계장부가 분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.

□ 運營主體와 相談所間의 空間 分離與否

- 가정폭력상담소는 사단법인(26.1%), 종교법인(14.3%), 기타법인(51.9%)에 속한 상담소의 경우 운영주체와 공간을 공동 사용하였음.
- 성폭력상담소는 사단법인과 기타법인에 속한 상담소의 경우 각각 24.0%와 13.3%가 운영주체와 상담소의 공간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.
- 상담소의 상당수가 운영에 있어서의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보임.

□ 家庭暴力·性暴力 被害者 治療費 支援

- 피해자 치료비를 시·군·구로부터 지원받는 경우를 보면, 가정폭력상담소는 26.7%, 성폭력상담소는 63.3%로 성폭력상담소가 지원 받는율이 36.6%포인트나 높았음.
  - 가정폭력상담소는 구상권 청구의 문제로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는 곳도 일부 나타나 행위자에게 치료비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은 실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음.

□ 被害者 治療費 執行上 問題點

- 치료비를 지원받는 상담소만을 대상으로 치료비 집행상의 문제

점을 확인결과, 가정폭력상담소는 구상권 행사로 인해 치료비를 적절히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한 경우가 가장 많은 비율(36.4%)을 차지하였음.

- 성폭력상담소는 치료비 청구 절차상의 문제(22.2%)와 치료비 지급액 한도의 융통성이 없음(22.2%)을 지적하였음.

#### □ 運營上の問題

- 가정폭력·성폭력관련 사업운영상의 어려움을 우선순위에 따라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, 가정폭력·성폭력 상담소 모두 재정부족을 1순위로 지적하였음(가정폭력상담소: 80.5%, 성폭력상담소: 83.3%).
- 2순위로는 전문인력 부족(가정폭력상담소: 44.2%, 성폭력상담소: 56.6%)으로 나타났음.
- 3순위로는 홍보부족(가정폭력상담소: 27.0%, 성폭력상담소: 38.7%)이었음.

#### □ 相談關聯 従事者を 위해 時急に 解決해야 할 問題

- 가정폭력·성폭력 상담소에서 상담관련 종사자를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는 직원 급여수준 개선(가정폭력상담소: 44.3%, 성폭력상담소: 55.4%), 직원증원 및 충원문제(가정폭력상담소: 35.9%, 성폭력상담소: 25.3%)와 직원 보수교육(가정폭력상담소: 13.0%, 성폭력상담소: 18.1%) 등의 순으로 지적되었음.

#### □ 專門相談員 確保 問題

- 각 상담소의 전문상담원 확보 문제는 가정폭력·성폭력 상담소 모두 낮은 급여수준(가정폭력상담소: 75.0%, 성폭력상담소: 73.8%)을 지적하고 있어 전문상담원 확보에 있어 무엇보다도 급여수준이 열악하다는 것이 공통된 문제임.

### 3. 障碍人 接近 可能性

#### 障碍人 接近 可能性 및 施設 設置率

- 가정폭력·성폭력 상담소에 장애인의 접근이 가능한 경우는 가정폭력상담소는 56.4%, 성폭력상담소는 57.0%로 나타나서 상담소의 상당수가 장애인의 접근이 가능하지 않았음.
  - 장애인들의 상담소 접근이 용이하도록 장애인 편의시설이 어느 정도 설치되었는지 비교해 보면, 전체적으로 가정폭력상담소 보다는 성폭력상담소의 편의시설 설치율이 높은 편임.

#### 障碍人 接近을 위한 補完事項

- 가정폭력·성폭력 상담소에서 장애인 접근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한 보완사항으로 가장 많이 지적한 것은 장애인 이동을 위한 승강기, 휠체어리프트, 경사로 설치로 가정폭력상담소는 52.1%, 성폭력상담소는 48.0%이었음.

### 4. 프로그램 및 서비스 現況

#### 프로그램 運營

-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대부분의 상담소에서 운영하고 있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음.
  - 그 다음은 피해자 대상의 프로그램, 행위자 대상의 프로그램 운영 순으로 행위자 대상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상담소가 가장 적었음.

#### 對象別 프로그램 運營

- 일반인 대상 프로그램으로 가정폭력상담소는 가정폭력·성폭력

예방교육이나 인식관련 프로그램이 가장 높은 비율(12.3%)을 차지하였음.

- 성폭력상담소는 가정폭력·성폭력 전문상담원 교육과 상담원 양성교육 및 재교육과 가정폭력 근절과 예방운동 캠페인, 가정폭력·성폭력 추방캠페인이나 서명운동 등이 각각 14.3%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음.
- 피해자 대상 프로그램으로 가정폭력상담소는 폭력대처방안, 개별치유 프로그램, 성폭력이나 아동치료 프로그램과 같이 피해자 대상 프로그램(14.9%)이 많이 운영되고 있었음.
  - 성폭력상담소는 개별상담, 피해자 치유상담(21.2%), 폭력대처방안, 개별치유프로그램, 성폭력이나 아동치료프로그램(14.2%) 등이었음.
- 행위자 대상 프로그램으로 가정폭력상담소는 병원이나 법원 수탁 행위자 상담프로그램이나 행위자 심리상담 등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음(18.1%).
  - 성폭력상담소는 행위자 교육 프로그램, 개별교정 프로그램, 행위자 치료 프로그램, 분노조절 프로그램이 32.0%를 차지하였음.

#### □ 서비스 類型

- 상담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을 보면 가정폭력상담소와 성폭력상담소 모두 정신 및 정서상담서비스(가정폭력상담소: 97.0%, 성폭력상담소: 98.8%)를 가장 많이 제공하고 있음.
  - 그러나 가정폭력상담소, 성폭력상담소 모두 중요한 서비스 중의 하나인 법률구조 및 사회복지지원 서비스는 저조한 제공률을 보이고 있음.

□ 家庭暴力·性暴力 相談所의 서비스 對象者 類型

- 가정폭력상담소의 서비스 프로그램은 주로 피해자(100.0%) 및 피해자 가족(83.1%)을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으며, 71.5%는 행위자를 대상으로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남.
- 성폭력상담소의 서비스 역시 피해자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피해자 가족(81.0%)에게도 비교적 많은 서비스가 제공되었으나 행위자 대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성폭력상담소는 48.8%로 과반수 미만의 수준으로 나타남.
  - 따라서 다양한 행위자서비스프로그램의 개발과 함께 행위자를 프로그램에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.
  - 또한 피해자나 행위자를 대상으로 하는 개별서비스뿐만 아니라 가족단위의 서비스 프로그램이 강화되어야 할 것임.

□ 家庭暴力·性暴力 相談所의 서비스 및 相談 實績

- 지난 1년간 상담소 1개소 당 제공된 서비스의 분포를 보면 가정폭력·성폭력 상담소 모두 정신 및 정서상담이 타 서비스에 비해 가장 높았고(가정폭력상담소: 40.1%, 성폭력상담소: 35.2%), 사회복지지원서비스(가정폭력상담소: 3.1%, 성폭력상담소: 2.8%)는 타 서비스에 비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음.
- 상담소별 평균 전담의료기관 수는 가정폭력상담소가 3.17개, 성폭력상담소가 3.26개로 성폭력상담소가 가정폭력상담소보다 전담의료기관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음.

□ 家庭暴力·性暴力 相談所의 相談件 數 및 內容

- 지난 1년 간 상담소 1개소 당 실시한 상담유형별 상담건수를

보면 가정폭력상담소는 전화상담은 전체 상담건수의 43.2%로 타 유형의 상담에 비해 가장 높았고 내방상담이 22.6%, 인터넷 상담이 13.5%, 방문(출장)상담이 12.7%, 서신·FAX 상담이 8.0%로 나타나 상담유형별로 상담건수간에 커다란 편차를 보였음.

- 성폭력상담소의 전화상담은 총 상담건수의 34.3%의 비율을 보여 타 유형의 상담에 비해 가장 높았고, 그 다음은 인터넷 상담(19.0%)이었고, 내방상담(17.1%), 서신·FAX상담(16.8%), 방문(출장)상담(12.7%)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음.

- 지난 1년간 우리나라 가정폭력·성폭력 상담소에서 수행한 상담 내용의 분포를 보면 가정폭력상담소는 가족문제가 41.8%의 비율을 보여 상담내용 중 가장 많은 비중을 보였고, 가정폭력이 21.6%, 일반문제 16.2%, 성폭력 12.4%, 기타 8.1%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나타났음.
- 성폭력상담소의 상담내용은 크게 성폭력이 40.1%로 가장 많았고, 가족문제 29.1%, 일반문제 14.4%, 기타 8.5%, 가정폭력 7.8%의 분포를 보였음.

#### □ 相談員의 相談日誌·事例紀錄 作成 與否 및 事後管理

- 가정폭력·성폭력 상담소에 근무하는 상담원 중 상담일지 및 사례기록을 체계적으로 작성하는 비율은 전체 상담원의 99.4%이며, 사후관리를 실시하는 비율은 전체 상담원의 81.0%임.
- 가정폭력상담소에 근무하는 상담원의 상담일지·사례기록 작성률은 99.2%, 성폭력상담소는 99.6%의 비율을 보여서 상담소간에 비슷한 수준을 보였음.
- 사후관리를 실시하는 상담원은 가정폭력상담소 상담원의 78.6%, 성폭력상담소 상담원의 83.5%임.

## 5. 從事者 實態

### □ 相談員의 入社經路

- 전체 상담원의 입사경로는 연고 및 소개(46.2%)로 채용된 경우가 가장 많았고 공개채용(30.0%), 학교 또는 기관의 추천(13.9%)이나 기타(자격특채, 자원봉사활동계기, 9.9%) 등임.
  - 따라서 전문성 있는 상담원의 확보를 위해서는 상담소별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상담원의 자격기준을 마련하여 공식적인 절차에 의해 상담원을 채용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임.

### □ 相談員의 賃金水準 및 滿足度

- 전체 상담원의 평균임금은 81.65만원이었으며 가정폭력상담소에 근무하는 상담원의 평균임금은 76.01만원, 성폭력상담소의 상담원 평균임금은 86.56만원이었음.
- 가정폭력·성폭력 상담소에 근무하는 상담원의 임금에 대한 불만족률은 63.9%, 만족하는 비율은 5.8%를 보였음.
  - 가정폭력상담소에 근무하는 상담원의 임금에 대한 불만족 비율은 67.6%, 만족비율은 5.6%로 나타난 반면 성폭력상담소는 불만족 비율은 60.2%, 만족하는 비율은 6.0%를 보였음.
  - 전체 상담원의 평균 만족도는 2.20점이었으며, 가정폭력상담소는 2.16점, 성폭력상담소는 2.26점으로 가정폭력상담소에 근무하는 상담원의 만족도 점수는 전체 만족도 수준보다 낮았고, 성폭력상담소의 상담원의 만족도는 전체 만족도 수준보다 높게 나타나 있음.

### □ 相談員의 相談經歷 및 資格

- 상담원의 총 상담경력은 평균 4.79년으로 가정폭력상담소에 근무

무하는 상담원은 평균 5.34년이었으며 성폭력상담소의 상담원은 평균 4.17년으로 가정폭력상담소에 근무하는 상담원의 총 상담경력이 성폭력상담소보다 평균 1.17년 정도 더 길었음.

- 가정폭력상담소 상담원의 근무년수는 평균 2.14년, 성폭력상담소는 평균 1.96년으로 가정폭력상담소에서 근무하는 상담원의 근무년수가 길게 나타났음.
- 결과적으로 가정폭력·성폭력 상담소에 근무하는 상담원은 대체로 타 복지기관에 근무하는 상담원에 비해 상담 및 근무경력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음.

#### □ 相談員の 資格

- 전문상담원의 자격증을 소지한 비율을 비교해보면 가정폭력상담소에 근무하는 상담원의 93.8%가 자격증을 소지하였으며, 성폭력상담소 상담원의 자격증을 소지한 비율은 98.7%이었음.
  - 이외에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가진 상담원은 전체 중 20.3%이었고, 가정폭력상담소의 상담원은 19.7%, 성폭력상담소의 상담원은 21.0%로 두 상담소간에 비슷한 수준을 보였음.

### 6. 機關間 連繫 및 地域協議體 參與

#### □ 連繫實態

- 가정폭력상담소가 지난 1년 간 비교적 활발하게 서비스를 주고 받은 기관은 타 가정폭력·성폭력 상담소, 법률구조공단, 여성긴급전화 「1366」, 보호시설, 의료기관이었음.
  - 그밖에 경찰, 사회복지관, 보호관찰소, 119구조대, 응급구조단의 기관과는 서비스 연계가 저조하였음.

- 성폭력상담소가 지난 1년 간 가장 활발하게 연계를 주고받은 기관은 타 성폭력·성폭력상담소, 의료기관, 경찰, 보호시설, 법률구조공단 등이었음.
  - 이외에 여성긴급전화 「1366」, 사회복지관, 보호관찰소, 119 구조대, 응급구조단과는 서비스 연계가 소극적이었음.

□ 地域協議體 參與欲求

- 성폭력상담소의 지역협의체 구성률은 가정폭력상담소보다 높았으나 참여율은 가정폭력상담소보다 약간 낮았음.
  - 지역협의체 구성률은 가정폭력상담소 67.7%, 성폭력상담소 74.4%로 성폭력상담소가 가정폭력상담소보다 협의체 구성 비율이 높았음.
  - 상담소의 지역협의체 참여율은 가정폭력상담소 100.0%, 성폭력상담소 98.4%이었음.
- 지역협의체의 역할을 보면 가정폭력상담소는 각 참여기관에 대한 업무협조요청이 83.1%로 가장 많았고, 성폭력상담소는 각 참여기관의 서비스에 대한 정보교환(84.1%)이 가장 많았음.

□ 地域協議體 必要度 및 主管機關

- 가정폭력·성폭력 상담소 중에서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상담소의 협의체 필요율은 가정폭력상담소, 성폭력상담소 모두 100.0%로 나타나서 협의체 필요도가 상당히 높았음.
- 가정폭력·성폭력 상담소 모두 향후 협의체가 구성될 경우 협의체 주관기관으로 시·도 여성복지담당자를 가장 선호하여 민간보다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가 높음을 알 수 있음(가정폭력상담소: 45.0%, 성폭력상담소: 39.1%).

## 7. 建議事項

- 가정폭력·성폭력 상담소의 운영 및 관리상에 있어서의 건의사항을 살펴보면 가정폭력·성폭력 상담소 모두 재정지원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음(가정폭력상담소: 25.8%, 성폭력상담소: 20.0%).

## 第 6 章 家庭暴力·性暴力 被害者保護施設의 實態分析

### 1. 分布 및 一般特性

#### 가. 年度別 變化

- 피해자보호시설의 연도별 증가추이는 미미한 수준이나 실제 입소율을 감안할 경우 공급부족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움. 그러나 상담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역별로 불균형적 배치가 되어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음.
  - －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은 1999년 23개소에서 2002년 29개로 증가하였음.
  - －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은 1999년 7개소에서 2001 8개소로 증가하였음.

#### 나. 地域別 分布

-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 및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의 분포는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였음.
  - －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은 전체 29개소로 이 중 서울이 8개소로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으며, 그 다음은 전남이 3개소, 충북, 충남, 경북, 경남이 각 2개소씩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 지역은 1

개소씩 설치되어 있음.

-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은 전체 8개소에 불과하며 지역별로는 서울, 부산, 경기, 전북만 설치되어 있고 1개소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이 많아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 보다 지역 간 배치에 있어 더욱 불균형적으로 이루어졌음.
- 피해자보호시설의 시·도별 분포를 지역인구와 비교한 1개 보호시설당 10~64세 여성인구수는 전국 평균 493,712명임.
  - 경기도가 1개 보호시설에서 10~64세 여성인구 1,222,292명을 담당하고 있었고, 제주도는 1개의 보호시설에서 10~64세 여성인구 195,321명을 담당하고 있어 대조적 양상을 보였음.
- 필요에 따라서는 몇 개 시·군·구를 통합한 지역에 상담소 및 보호시설이 설치될 수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지역별 균형적 설치가 요망됨.
  - 이를 위해서는 전문 연구기관에서 기준을 설정하고 ‘(가칭) 여성폭력종합상담소’ 설립과의 연계가 바람직할 것임.

#### 다. 保護施設의 一般特性

##### □ 運營主體別 分布

- 가정폭력·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의 운영주체는 사단법인이 각각 39.1%와 71.4%로 가장 많았음.

##### □ 設立年度

-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의 73.9%가 1999년 이전에 26.1%는 2000년에 설립되었음.
-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의 71.4%는 1999년 이전에, 28.6%는 2000년 이후에 설립되었음.
  -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이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보다 최

근에 설립된 경우가 많았음.

□ 運營期間

- 평균 운영기간은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은 3.5년,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은 3.7년으로 나타났음.

□ 所有形態

- 피해자보호시설의 소유형태는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은 자가 26.1%이고, 전세 30.4%, 월세 8.7%, 전·월세 8.7%로 전체 47.8%가 전세나 월세 등임.
  -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은 자가는 42.9%, 전세나 월세 등도 42.9%로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보다 주거의 안정성은 높다고 할 수 있음.

□ 施設現況

- 집단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한 별도의 공간을 보유하고 있는 비율은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은 69.6%,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은 85.7%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.
  - 개별상담실은 가정폭력·성폭력보호시설의 80% 이상이 보유하고 있어 집단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공간보다는 많은 보호시설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공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비율이 높았음(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: 36.4%,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: 57.1%).

□ 職員 및 相談員 現況

- 각 피해자보호시설의 평균 직원 수는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

의 경우는 2.39명,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의 경우는 2.86명으로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보다는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의 직원 총수가 더 많았음.

- 상담원은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이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보다 많은 편이나 그 차이는 크지 않았음(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: 2.11명,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: 0.33명).

□ 運營主體의 一般特性

- 가정폭력·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의 평균 운영기간은 기타법인과 종교법인이 가장 길어 각각 28.9년, 28.8년이었고, 사단법인이 가장 짧아 12.3년이었음.
- 보호시설의 운영주체별 평균 직원 수를 보면 재단법인이 17.3명으로 가장 많았고, 사회복지법인 16.7명, 종교법인 16.5명 등이었음.

□ 運營主體의 同時 運營機關

- 가정폭력·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의 운영주체별 동시에 운영하고 있는 기관을 살펴보면, 사회복지법인은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과 가정폭력상담소를 동시에 운영하고 있는 비율은 28.6%이었고, 기타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비율은 42.9%이었음.
- 사단법인은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과 가정폭력상담소를 동시에 운영하는 비율은 77.8%로 가장 많았고, 재단법인은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과 가정폭력상담소를 동시에 운영하는 비율은 100.0%이었음.
  - 종교법인은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과 가정폭력상담소를 동시에 운영하는 비율은 50.0%이었음.

運營主體의 대표와 被害者保護施設 代表의 同一 與否

- 운영주체의 대표와 피해자보호시설 대표가 동일한 경우는 가정 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은 17.4%이었으며,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은 운영주체 대표가 피해자보호시설 대표를 겸하는 경우는 하나도 없었음.

2. 運營實態

入所人員

- 평균 수용인원은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이 17.2명이었으며,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은 9.43명으로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의 입소자가 더욱 많았음.

家庭暴力·性暴力 相談所의 職員 採用方法

- 가정폭력·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의 직원채용방법이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은 비공개 채용이,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은 제한적 공개채용이 가장 많았으나, 완전 공개채용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음.
  -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은 비공개 채용 52.4%, 제한적 공개 채용 42.9%, 공개채용이 4.8%로 비공개 채용의 비율이 높았음.
  -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은 비공개 채용이 42.9%, 제한적 공개채용은 57.1%로 높은 비율을 보였음.

運營主體와 被害者保護施設의 會計帳簿 分離與否

- 운영주체와 피해자보호시설간의 회계장부의 분리여부를 살펴보

면,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의 4.3%만이 분리되지 않았음.

- 운영주체별로는 기타법인에 속한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만이 회계장부가 분리되지 않은 비율이 33.3%이었음.
-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은 운영주체와 피해자보호시설간의 회계장부가 분리되지 않은 비율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음.

□ 相談人力 充分與否

- 가정폭력·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의 인력이 적절한지의 여부를 확인한 결과,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은 77.3%와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의 85.7%가 부적절하다고 응답하여 상당수의 피해자보호시설이 인력의 부족을 지적하였음.

□ 豫算 充分與否

- 가정폭력·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별로 예산의 충분 여부를 보면,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의 91.3%와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은 85.7%가 부족하다고 응답하였음.
- 부족한 예산비목은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은 인건비의 부족,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은 사업 수행비의 부족을 가장 많이 지적하였음

□ 運營上 問題點

- 가정폭력·성폭력관련 사업운영상의 어려움으로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은 재정부족을 1순위로 지적하였으나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은 전문인력 부족을 지적하였음.
- 제2순위로는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은 전문인력 부족을,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은 재정부족을 지적하였음.

- 제3순위로는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은 홍보부족을,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은 전문인력 부족, 홍보부족, 타 기관과의 연계 부족, 협의체 활동이 없는 것 등을 지적하였음.

相談關聯 従事者を 위해 時急に 解決해야 할 問題

- 가정폭력·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에서 상담관련 종사자를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가정폭력·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 모두 직원증원 및 충원(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: 45.5%,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: 50.0%)이었음.

専門相談員의 確保

- 각 피해자보호시설의 전문상담원 확보상의 가장 큰 문제는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은 낮은 급여수준(72.7%)을,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의 경우는 과중한 업무(57.1%)를 지적하여 피해자보호시설간의 차이를 보였음.

### 3. 運營 프로그램 및 서비스 現況

運營 프로그램

- 가정폭력·성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일반인 대상이나 행위자 대상의 프로그램보다 많은 피해자보호시설에서 운영되고 있었음.
  - 행위자 대상의 프로그램은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일반인 대상의 프로그램 보다 낮았음.

一般人 對象 프로그램

- 일반인 대상 프로그램으로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은 홍보물

제작이,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은 일반인 대상의 예방교육프로그램이 가장 많았음.

-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은 관련 홍보물 제작·배부 및 화보 발행이 가장 많은 비중(50.0%)을 차지하였으며, 그 다음은 예방교육(17.9%), 교원대상의 직무연수(14.3%) 등이었음.
-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은 일반인 대상의 교육프로그램(50.0%) 과 무료법률 교양강좌, 가정폭력방지법 등에 관한 홍보 캠페인, 법 바로 알기 등의 유인물 배포 등(25.0%) 등이었음.

□ 被害者 對象 프로그램

- 피해자 대상 프로그램으로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은 피해자 대상의 집단상담 프로그램이,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에서는 폭력대처방안이 가장 많이 실시되고 있었음.
  -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은 대상별 프로그램이 가장 많이 운영되고 있었음(21.4%).
  -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은 폭력대처방안과 피해자 개별치유 프로그램, 아동이나 성폭력 피해자 등 대상별 프로그램 운영(20.0%), 취미활동, 야외학습, 꽃꽂이, 수지침 등(16.0%), 신앙교육을 통한 인성교육 등(16.0%)의 순으로 시간배분이 되고 있었음.

□ 行爲者 對象 프로그램

- 행위자대상 프로그램으로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은 병원이나 법원 수탁 행위자 상담프로그램이나 행위자 심리상담 등 개별 상담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음(40.0%).
-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은 행위자 교육프로그램, 개별 교정프로

그램, 행위자 치료프로그램, 분노조절 프로그램(25.0%), 재발방지 프로그램이나 가정폭력 예방프로그램, 장애별 성교육 프로그램(25.0%)이 운영되고 있었음.

#### □ 서비스의 類型

- 피해자보호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을 보면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은 정신 및 정서상담(95.7%), 전담의료기관주선(95.7%)이 제공되었음.
  -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은 법률상담(100.0%), 정신 및 정서상담서비스(100.0%), 전담의료기관주선(100.0%)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음.
  - 법률구조는 타 서비스에 비해 저조한 서비스 제공률을 보이고 있어서 법률서비스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음을 보여줌.

#### □ 서비스 對象者

-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의 서비스 프로그램도 가정폭력·성폭력 상담소와 마찬가지로 주로 피해자(100.0%) 및 피해자 가족(78.3%)을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음.
  -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의 서비스 역시 피해자(100.0%) 중심으로 제공되었으며 피해자 가족(71.4%)에게도 높은 비율로 서비스가 제공되었음.
- 행위자 대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은 39.1%인데 비해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은 14.3%로 저조한 수준임.
- 장애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율은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은 42.9%,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은 57.1%이었음.

-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이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보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율이 높았음.

#### □ 入所程度

- 피해자보호시설별로 평균 정원을 보면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의 정원은 1개소 당 평균 17.00명,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은 8.57명이었음.
  -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의 1개소 당 정원은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의 약 2배에 이르고 있어서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은 상대적으로 소규모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음.
- 가정폭력·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의 평균 입소율을 보면,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이 57.1%,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이 50.0%이었음.
  -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이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보다 정원 대비 연거주자 비율이 약간 높았음.

#### □ 收容程度

-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의 수용률은 91% 이상이 73.9%, 51~90% 이하가 17.4%, 50% 이하가 8.7%의 비율에 불과하였음.
  -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도 91% 이상이 85.7%, 50% 이하가 14.3%로 나타남.
- 지난 1년간 가정폭력·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 1개소 당 평균 입소자수는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은 85.15명,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은 28.0명으로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이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보다 약 3배가 많았음.

#### □ 相談実績

- 지난 1년간 우리나라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 1개소 당 피해자에게 제공한 총 서비스 건수는 평균 508.28건,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은 472.85건임.
  - 서비스 내용별 분포를 보면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과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 모두 정신 및 정서상담 서비스가 가장 많이 제공되고 있음.
  -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은 전체 서비스 건수의 46.5%,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은 53.3%이었음.
-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이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에 비해 많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는 법률상담, 전담의료기관추천, 법률구조, 사회복지지원, 기타 등이었음.
  - 이외의 서비스는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이 높은 수준을 보였음.
- 상담유형별로 상담건수의 분포를 보면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은 집단상담이 전체 상담건수의 55.5%로 타 유형의 상담에 비해 가장 많았음.
  - 개별상담은 43.7%, 가족상담은 0.9%로 나타나 상담유형별로 커다란 편차를 보였음.
  -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은 개별상담이 66.6%로 가장 많았고, 집단상담이 33.1%, 가족상담이 0.3%로 역시 상담유형별로 차이를 보였음.

#### 4. 従事者 現況

##### □ 職員の 入社経路

- 피해자보호시설의 전체 직원의 입사경로는 연고 및 소개

(38.5%)로 채용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공개채용(27.7%)이 그 다음으로 많았음.

- 공개채용의 비율은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은 23.4%,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은 38.9%에 불과하였음.
- 직원의 입사경로는 아직까지 공식적인 절차보다는 비공식적인 절차에 의한 입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.

#### □ 職員の 賃金水準 및 満足度

- 피해자보호시설에 근무하는 전체 직원의 평균 임금수준은 가정폭력·성폭력 상담소 상담원의 평균 임금수준(81.65만원)보다는 20여 만원이 높은 105.38만원임.
  -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의 평균임금이 110.52만원으로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의 평균임금인 102.0만원보다 평균 8.52만원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의 임금수준이 다소 높은 것으로 보임.
- 가정폭력·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근무하는 직원의 월급여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불만족 하는 경우가 56.6%이었음.
  -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 직원 중 월 급여에 대해 불만족한 직원은 57.8%(매우 불만족: 20.0%, 불만족: 37.8%)를 차지하였음.
  -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은 불만족한 직원이 53.3%(매우 불만족: 13.3%, 불만족: 40.0%)로 나타나,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의 직원보다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 직원의 월급여에 대한 불만족도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.

#### □ 職員の 勤務經歷

- 가정폭력·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에 종사하는 직원의 평균 총

근무경력은 5.66년이며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 직원의 평균 총 근무경력은 6.26년으로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의 평균 총 근무경력은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 직원보다 평균 4.82년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남.

- 피해자보호시설에서의 근무경력의 전체 평균은 2.09년으로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 직원(1.94년)이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 직원(2.27년)보다 짧은 경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음.

#### □ 職員の 資格

- 피해자보호시설에 근무하는 직원의 전문자격증 소지율에 있어서는 전체 직원 중 가정폭력·성폭력 전문상담원 자격증을 소지한 직원이 86.4%로 가장 많았음.
- 사회복지사 1급(35.4%), 사회복지사 2급(6.2%)등의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직원은 41.6%를 차지하였으며 기타 상담 관련 자격증을 가진 직원은 30.8%로 나타났음.

### 5. 連繫 및 地域協議體

#### □ 連繫實態

- 2001년도를 기준으로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이 지난 1년 간 타 기관으로부터 연계 받은 건수는 피해자보호시설 1개소 당 평균 67.52건이었음.
-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에서 타 기관으로 연계한 서비스 건수는 평균 86.18건으로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 1개소 당 총 153.70건의 연계 서비스가 발생하였음.
-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이 지난 1년 간 비교적 활발하게 서비스를 주고받은 기관은 의료기관, 피해자보호시설, 기타 기관(가

정폭력·성폭력 상담소), 여성긴급전화 「1366」의 기관이었음.

- 이외에 경찰, 법률구조공단, 사회복지관, 보호관찰소, 119구조대, 응급구조단의 기관과는 서비스 연계가 극히 저조하였음.
-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이 지난 1년 간 타 기관으로부터 연계 받은 건수는 피해자보호시설 1개소 당 평균 32.45건이었음.
  -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에서 타 기관으로 연계한 서비스 건수는 평균 31.40건으로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 1개소 당 평균 총 63.85건의 연계 서비스가 발생하였음.
-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이 지난 1년 간 비교적 활발하게 서비스를 주고받은 기관은 기타 가정폭력·성폭력 상담소, 의료기관, 피해자보호시설의 기관이었음
  - 이외의 법률구조공단, 여성긴급전화 「1366」, 사회복지관, 경찰, 119구조대의 기관과는 서비스 연계가 극히 저조하였음.

□ 地域協議體 欲求

- 피해자보호시설의 협의체 구성비율은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이 82.6%,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이 85.7%로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이 약간 높았음.
- 피해자보호시설의 협의체 참여율은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은 94.7%이었고,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은 83.3%의 비율을 보였음.
  - 가정폭력·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의 협의체 모임에 높은 참여율을 보인 기관은 타 피해자보호시설 및 여성긴급전화 「1366」 및 시·도 여성복지담당자 등이었음.
- 협의체 모임의 운영을 주관하는 기관을 보면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은 여성긴급전화 「1366」이 협의체 모임을 주관하는 비율이 46.7로 가장 많았고,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도 여성긴급

전화 「1366」 이 협의체 모임을 주관하는 비율이 80.0%로 가장 높았으며, 피해자보호시설(20.0%)도 협의체를 주도하였음.

- 협의체의 역할을 보면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 및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 모두 각 참여기관에 대한 업무협조요청(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: 94.4%,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: 80.0%)이 가장 많았음.
- 협의체가 없는 피해자보호시설의 협의체 필요율은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 60.0%,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 100.0%로 나타났음.
  -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은 협의체의 필요성에 대해 상당히 소극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반해,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은 협의체의 필요도에 대해 매우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음.

## 6. 建議事項

### 家庭暴力 被害者保護施設의 建議事項

- 가정폭력·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의 운영 및 관리상에 있어서의 건의사항을 살펴보면,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은 운영비의 지속적인 충당, 전문인력 활용을 위한 재정지원, 보호자 대상의 문화생활과 시설 내 취업교육 실시를 위한 예산지원, 인건비 증액 등의 재정지원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 29.4%이었음.
  - 또한 전문인력 양성 및 충원, 피해자보호시설의 보호기간 연장 순이었음.

### 性暴力 被害者保護施設의 建議事項

-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은 보호시설 피해자의 보호기간 연장 및 현실화와 청소년 입소자의 교육비 면제 및 보조, 전학시 관계

기관 협조, 인건비와 입소자 생계보조금의 운영비와의 분리 등이 각각 18.2%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음.

- 이 외 행정간소화, 전문인력 충원, 보호시설의 여성부에서 지은 후 위탁운영, 운영비 지급규정의 일원화 등이 각각 9.1%로 그 다음 순이었음.

## 第 7 章 家庭暴力·性暴力 專門相談員 教育의 現況과 問題點

### 1. 專門相談員 養成教育의 現況과 問題點

- 본 실태조사결과 현행 실시되는 양성과정 중에서 가장 부적절한 부분으로 지적된 것은 교육내용부실과 교육시간 등이었음.
  - － 성폭력상담원의 자격기준은 가정폭력상담원에 비해 그 범위가 넓고, 학력수준은 약간 높게 명시되어 있으나, 성폭력상담원이 되기 위한 교육시간 및 교육과목은 가정폭력상담원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(36시간, 2과목이 적음).
    - 교육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개설교과목의 심층적인 이해나 상담사례실습 및 실무사례발표 부분에 있어 성폭력전문상담원이 가정폭력상담원에 비해 충분히 소화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됨.
  - － 교육내용 면에서 성폭력상담원은 가정폭력상담원에 비해 성 및 성폭력에 관한 일반론, 성폭력관련 법, 법률구조, 가족상담 등에 관한 내용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음.
- 상담원의 양성은 정부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은 거의 없는 실정으

로 주로 민간의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음.

- 그러나 양성교육과정은 민간기관에 따라 교과목 및 교육내용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 전문상담원으로서의 자질과 대민 서비스 제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원인이 되고 있음.

□ 사회복지사양성과정 및 아동학대전문상담원과 가정폭력·성폭력 전문상담원의 양성과정을 비교하면 사회복지사 양성교육과정은 동일한 교육기관에서 표준화된 교과목으로 체계적인 교육훈련이 실시되고 있음.

- 그러나 가정폭력·성폭력 전문상담원의 양성과정은 위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민간기관마다 다른 교육과정이 실시되고 있어서 상담원 자질상의 차별을 초래하고 있음.

- 학력수준에 따라 차별성을 두어 자격증이 발급되지 않고 가정폭력전문상담원, 성폭력전문상담원으로만 동일하게 양성되고 있어서 상담원의 자질에 따라 대민 서비스의 수준은 커다란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.

- 양성과정의 교육생의 학력이 대졸인 경우를 기준으로 할 때, 과목당 평균 교육시간을 비교하면 사회복지사 양성과정은 1과목 당 10.8시간, 아동학대전문상담원은 7.8시간인 반면, 가정폭력상담원은 6.7시간, 성폭력상담원은 4.9시간으로 나타나 사회복지사 양성과정에는 절반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으며 아동학대전문상담원 양성과정과도 차이를 보이고 있음.

## 2. 專門相談員 補修教育의 現況과 問題點

□ 상담원들을 위한 보수교육은 보건복지연수부의 상담원심화과정 등 일부 과정이 개설되어 있고, 여성부에서 한국여성개발원이나 대한

가족보건복지협외에 의뢰하여 사안별로 보수교육이 실시되었음.

－ 중앙부처에서 실시되는 보수교육과정은 상담원의 욕구와 수준에 따라 변별력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못하는 실정임.

- 실시되는 프로그램도 일회성이나 단편적 실시에 그쳐서 프로그램이 연속적으로 공급되지 못하고 있음.

□ 본 실태조사 결과 상담원의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47.6%는 민간단체이었고, 24.4%은 개인 및 법인에서 운영하는 상담소로 나타났다.

－ 공공기관은 11.2%에 불과하였고 나머지도 민간의 연구기관, 학회, 교육원, 치료기관이었음.

-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 상당히 포괄적이어서 교육기관의 수준이나 자질에 따라 보수교육 교육내용에 커다란 편차를 보였음.
- 현재 상담원을 대상으로 훈련내용에 대한 평가와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, 보수교육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상담원으로서의 자질을 인정받기에는 어려움이 있음.

### 3. 相談員의 補修教育 參與 現況

□ 補修教育參與率

－ 상담원의 보수교육 참여율은 기관별로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으나, 실제로 상담원의 보수교육 참여는 기관 자체 인력수준이나 근무환경 및 운영주체의 재정자립도 등의 요인에 의해 심한 편차를 보이고 있음.

- 가정폭력상담소의 보수교육 참여율은 66.0%, 성폭력상담소는 67.4%의 참여율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음.
  -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은 60.4%,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은 66.7%로 나타나서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이 약간 높았음.
- 상담원이 보수교육에 참여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시간이 부족한 것과 훈련과정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나타났으며, 이는 상담소와 피해자보호시설 모두 보수교육에 참여하지 못하는 공통된 문제점으로 드러났음.
- 상담원의 보수교육을 통한 자질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보수교육에 대한 홍보와 함께 상담소의 인력 및 예산지원도 동시에 병행되어야 할 것임.

#### □ 補修教育課程

- 가정폭력·성폭력 상담원의 보수교육과정은 주로 가정폭력상담원심화과정, 성폭력상담원심화과정, 교육과정, 치료기법과정, 워크숍과정 등에 집중되어 있음.
- 집단상담, 슈퍼비전 및 사례발표, 가족프로그램과정, 의사소통기술훈련과정, 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, 토론회 등의 보수교육을 받는 비율은 극히 미미하였음.

#### □ 補修教育實施期間

- 상담원의 보수교육을 받는 기간은 1주 미만인 단기간의 경우가 가장 많았음.
- 상담소의 경우 2주~1개월 미만인 비교적 장기간을 교육받은 경우도 많았으나 피해자보호시설은 2주 이상의 장기간인 경우는 상담소에 비해 적은 비율을 보였음.

□ 補修教育實施機關

- 가정폭력·성폭력상담원의 대부분은 민간단체 및 상담소 등 민간기관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받고 있으며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은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음.
  - 보수교육을 받는 기관의 수준에 따라 상담원의 자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.

□ 補修教育內容

- 가정폭력·성폭력상담원이 주로 받는 보수교육내용은 상담기초 및 상담기법, 상담사례, 치료프로그램에 집중되어 있음.
  - 반면 행위자상담, 사이버상담, 장애인상담, 슈퍼비전, 대상관계, 전문프로그램 및 법률 등에 관한 내용은 극히 저조한 수준으로 다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음.
- 상담원의 자질이나 경력에 적합한 차등화 된 프로그램이 실시되지 않고 있음.

□ 豫算支援

- 각 상담소 및 피해자보호시설별로 상담원 및 직원에게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비율은 보수교육과정의 과반수를 조금 넘고 있으며 나머지 보수교육과정은 자비로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.
  - 성폭력상담소 및 피해자보호시설의 경우 가정폭력상담소 및 피해자보호시설에 비해 예산지원이 높았음.
  - 각 기관의 저조한 예산지원은 보수교육 참여의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서 정부차원의 예산지원이 요구됨.

□ 補修教育 満足度

- 상담원의 보수교육 만족도는 70% 내외로 나타났으며 각 상담소 및 피해자보호시설별로 약간씩 차이를 보이고 있음.
  - 가폭력상담소에 근무하는 상담원은 77.4%, 성폭력상담소는 76.4%,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은 69.5%,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에 근무하는 상담원은 72.0%가 보수교육에 만족한 것으로 나타나 상담소가 피해자보호시설보다 만족률이 높았음 .
- 만족률이 높은 보수교육과정은 의사소통기술훈련, 슈퍼비전, 상담사례발표 및 모임, 연구, 성폭력심화과정 등이었음.
  - 반면 불만족률이 높은 보수교육과정은 장애인을 위한 교육, 가정폭력심화과정, 워크숍 과정 등이었음.

□ 相談員의 補修教育에 대한 欲求

- 보수교육의 필요율은 대부분 100.0%로 대부분의 상담소 및 피해자보호시설 모두 보수교육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음.
- 상담원이 선호하는 보수교육주기는 연 1회, 보수교육기간은 1회 2~3일을 가장 선호하였음.
- 상담원이 희망하는 보수교육 내용은 상담기법분야, 치료분야, 법률분야, 장애인분야, 상담자 소진분야, 각종 프로그램(현장적용 프로그램, 위기개입 후 치료프로그램), 피해자사후관리, 성폭력프로그램(사이버, 성매매) 등의 요구가 많았음.
- 상담원이 희망하는 보수교육방향은 첫째 중앙 및 시·도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의 연속적 실시, 둘째 상담원의 자질이나 경력에 따른 차등 교육프로그램의 시행, 셋째 이론과 실습을 병행할 수 있는 교육방법 실시, 넷째 우수한 강사진 확보 등이었음.

## 第 8 章 家庭暴力·性暴力 相談所 및 保護施設의 機能· 役割 強化方案

### 1. 適正 設置 및 設置基準

#### □ 適正數의 相談所·保護施設 基準

- 걱정 상담소수는 214개(제2안)이며, 향후 94개소의 상담소에 대한 정부예산의 추가지원이 이루어져야 함.
  - 예산의 한계 상 연차적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매년 20개소씩 향후 5년 간 추가지원을 확대할 것을 제시함.
- 걱정 보호시설 수는 53개(제2안)이며, 향후 16개소의 보호시설이 설립되어야 함.
  - 예산의 한계 상 연차적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매년 3개소씩 향후 5~6년간 시설설립이 추진되어야 할 것임.

#### □ 相談所 및 保護施設의 地域別 均衡設置

- 제1안은 인구 40%, 면적 40%, 시·군·구 수 20%를, 제2안은 인구 30%, 면적 20%, 시·군·구 수 50%를, 제3안은 인구 30%, 면적 30%, 시·군·구 수 40%를, 제4안은 인구 50%, 면적 30%, 시·군·구 수 20%를, 그리고 제5안은 제1안~제4안의 평균값을 적용한 것임.
  - 시·도별 걱정 상담소·보호시설의 수는 기준의 모호성을 최소화한 제5안을 걱정 안으로 제시함.

#### □ 相談所 및 保護施設의 設置基準 強化

- 첫째, 16.5m<sup>2</sup> 이상의 사무실 1개, 16.5m<sup>2</sup> 이상의 상담실 1개, 16.5m<sup>2</sup> 이상의 심리검사·치료실 1개, 24.75m<sup>2</sup> 이상의 집단지도실

1개 등이 최소한 구비되어 상담소의 전체 면적은 최소한 74.25m<sup>2</sup> 이상이어야 함.

- 둘째, 공간적으로 완전히 분리되고 방음장치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임.
- 셋째, 냉난방 장치가 잘 갖추어져 안락한 환경에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함.
- 넷째, 법인 사무실, 법인의 타 업무를 위한 공간 등과는 완전히 분리된 독립된 상담소를 갖추어야 함.
- 다섯째, 성폭력 피해보호시설의 구체적인 설치기준과 동일하게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은 입소정원 1인당 최소 면적 9.9m<sup>2</sup> 이상의 시설 규모, 거실 면적 입소정원 당 3.3m<sup>2</sup> 이상, 그리고 거실, 사무실, 상담실, 목욕·샤워 및 세면 설비, 조리실, 비상재해시설 등의 설비를 갖추어야 함.

□ 相談所 및 保護施設 類型의 多樣化

- 첫째, 가정폭력·성폭력 피해자의 연령특성을 고려한 가족 단위의 보호시설이 별도로 설립·운영되어야 함.
- 둘째, 피해여성 및 그들 가족이 장애인인 경우 접근도가 저하되지 않도록 전문 상담소 및 보호시설이 지역별로 균형 있게 설립·운영되어야 하겠음.
- 셋째, 기존의 상담소 및 보호시설이 장애자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설비를 갖추고 전문인력을 배치할 필요가 있음.

2. 家庭暴力·性暴力 連繫事業의 改善

□ 家庭暴力·性暴力 相談所의 專門性 強化

- 첫째, 가정폭력·성폭력 상담소는 폭력으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

- 하고 조기에 극복할 수 있는 질 높은 전문프로그램을 제공함.
- 둘째, 가정폭력·성폭력 상담소는 심각한 폭력으로서의 진전을 차단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전문프로그램을 제공함.
  - 셋째, 철저한 사례관리서비스를 통해서 질적인 피해자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며 방문상담 및 온라인을 통한 사이버 상담에 보다 많은 시간 및 인력투입이 있어야 하겠음.
  - 넷째, 여성긴급전화 「1366」이 적절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설립 및 운영근거를 동 법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위상을 정립할 필요가 있음.
    - 위기전화 또는 응급전화라는 제한된 상담서비스에서 벗어나 한 단계 진전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겠음.

□ 地域協議體의 活性化

- 첫째, 지역협의체가 정착될 때까지 시·도 지방자치단체가 주축이 되어 지역협의체를 운영하여야 할 것임.
- 둘째, 지역협의체는 위기여성의 긴급구조 및 공동대응, 전문상담기관간 및 사회복지시설간의 연대 및 협조체계 구축, 전문상담 영역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등에 관심을 증대시켜야 함.
- 셋째, 지역협의체는 분기별로 회의를 개최하여 여성폭력의 대응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환류시키는 역할을 하여야 함.
- 넷째, 사례관리에 대한 통합역할은 지역협의체에서 담당하고, 사례관리는 해당기관에서 담당하는 것이 전문성을 강화하고, 효율적 사례관리를 도모하는 방안임.

□ 家庭暴力·性暴力 相談所의 統合運營

- 첫째, 가정폭력상담소, 성폭력상담소를 통합하여 ‘(가칭) 여성폭

력종합상담소'를 설치·운영함.

- 둘째, 동 상담소의 인력은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가정폭력·성폭력 상담소 개소 수, 성매매 업소 수 등을 고려하여 5~6명을 배치하여 인력을 강화하여야 할 것임.
- 셋째, 개별상담소의 설치기준을 고려하여 통합상담소의 설치기준은 24.75m<sup>2</sup> 이상의 사무실 1개, 16.5m<sup>2</sup> 이상의 상담실 2개, 16.5m<sup>2</sup> 이상의 심리검사·치료실 2개, 24.75m<sup>2</sup> 이상의 집단지도실 1개 등이 최소한 구비되어야 하며, 상담소의 전체 면적은 최소한 115.5m<sup>2</sup> 이상이어야 함.

### 3. 相談所 및 保護施設의 管理運營 強化

#### □ 財政的 支援 強化

- 첫째, 지역별 적정상담소 수에 알맞은 충분한 인건비(통합상담소 5~6명, 가정폭력상담소 3명, 성폭력상담소 3명)를 지원함.
  - 보호시설에서는 시설장을 포함하여 3명의 최소인력과 입소자 10명당 1명의 인건비가 지원되어야 함.
- 둘째, 피해자 및 그들 가족, 행위자 등에 대한 적절한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하여야겠음.
  - 보호시설에서의 교육훈련 및 취업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이 요망됨.
- 셋째, 프로그램 비용의 지급 방법에 있어서 프로그램에 대한 공개경쟁 및 전문가 심사를 통하여 지급되는 방안이 질적 향상을 위하여 효과적일 것임.

#### □ 評價를 통한 豫算의 差等支援

- 첫째, 전문가에 의한 객관적 평가를 통하여 예산차등지원을 실

시험.

- 둘째, 평가방법을 공정하게 하며 평가자 간의 편차가 없도록 평가자에 대한 사전교육을 철저히 하고, 2인 이상으로 구성된 평가팀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.
- 셋째, 평가 결과를 수용하고 불합리한 내용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강구되어야 함.

□ 相談員·施設 従事者 數 및 資格基準 強化와 指導監督 強化

- 첫째, 가정폭력상담소의 경우 성폭력상담소 종사자의 자격 기준과 동일하게 상담소장 및 상담원에 대한 자격 기준을 명시 하여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실시함.
- 둘째, 가정폭력 보호시설 시설장의 자격 기준을 모자복지법의 시설장의 자격 기준과 동일하게 전문보호시설로서 시설장의 자격 기준을 강화하여 규정하도록 함.
- 셋째,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설치 및 설비가 적절하게 구비 되었는지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고, 부적절한 경우는 조속히 보완하거나 폐쇄 등의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함.
- 넷째, 규정된 상담원의 수 및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할 것이며, 특히 타 업무와 겸임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철저히 가려 본 업무에 전념토록 함.

□ 従事者の 勤務態度에 대한 自靜努力 및 政策的 誘導

- 첫째, 사회 전반적으로 토요일 휴무제가 도입되기 전에는 근무시간이 공무원의 근무시간에 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.
  - 차선책으로 격주 토요일 휴무 또는 일부 근무자를 두고 교대로 휴무하는 방안 등도 있을 것임.

- 둘째, 정부의 인건비 지원을 받는 상담원 및 보호시설 종사자는 법인 등 타 기관의 상근직을 겸직하지 않도록 함.
- 셋째, 외부강의는 가정폭력·성폭력의 예방 및 치료와 관련하여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경우에 최소한으로 수행하는 자체 규정을 갖거나 스스로 자제하는 자세가 필요함.
- 넷째,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공무원은 이러한 점이 적극 이루어지도록 유도하여야 하겠음.

□ 被害者 治療 및 保護 費用負擔 改善

- 첫째, 보호시설에 거주하는 피해자에 대한 보호비용과 의료비용은 전액 국가에서 부담토록 함.
- 둘째, 폭력피해여성 중 재가여성에 대하여는 의료비용을 피해자가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우선 지급하여 치료가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임.
  - 구상권 행사는 일정금액 이상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함.
- 셋째,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하여는 어떠한 경우에도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함.

4. 相談所 및 保護施設의 프로그램 強化

□ 被害者 및 被害家族 治療 프로그램의 強化

- 첫째, 가정폭력·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전문상담이 심층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, 지속적인 사례관리서비스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.
- 둘째, 가정폭력·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에서는 피해자의 인적자원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진학교육, 직업교육훈련, 창업지도 등을 실시하여야 함.

- 셋째, 가정폭력·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을 퇴소하는 여성들이 보건복지부의 「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」의 자활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 연계방안이 이루어져 함.

□ 行爲者 治療 및 再發防止 프로그램의 強化

- 첫째, 가정폭력·성폭력 상담소에서는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야 함.
- 둘째, 행위자에 대한 법원의 판결 시 전문상담원의 전문적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는 보호처분이 많이 내려져 재발방지프로그램의 투입이 보다 용이해져야 하겠음.

5. 相談所 및 保護施設 從事者の 資質向上 方案

□ 專門相談員 養成教育課程 強化

- 첫째, 가정폭력·성폭력 전문상담원의 자격을 부여하는 양성기관은 일정기준에 의하고, 여성부의 인정을 받은 기관에 국한되어야 함.
- 둘째, 가정폭력·성폭력 전문상담원의 자격을 갖추기 위한 교육시간의 상향조정이 요구되며, 향후 통합상담소에 종사하게 될 (가칭) 여성종합상담원을 위한 양성교육과정이 제공되어야 함.
- 셋째, 동 교육을 위한 교과목의 표준화와 전문상담기관에서의 충분한 실습시간이 포함되어져야 함.
- 넷째, 교육을 이수하였더라도 자격시험을 실시하여 부적격자에 대하여는 탈락시키거나 재교육을 실시하는 등 엄격한 관리운영이 있어야 하겠음.
- 다섯째, 자격부여를 위한 시험의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중앙 또는 시·도에서 문제를 출제하고 채점할 필요가 있음.

□ 家庭暴力·性暴力 従事者の 補修教育 強化

- 첫째, 여성폭력 관계자의 보수교육은 근무기간 및 전공분야에 따라 일반과정과 심화과정으로 구분하여 특화 실시토록 함.
- 둘째, 교육기간은 약 5일 이내에서 실시하며, 필요한 경우 숙박토록 함.
- 셋째, 교육비는 전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함.

□ 家庭暴力·性暴力 相談員 教育 講師의 資格基準 強化

- 가정폭력관련 법에 준하는 상담원 교육 강사에 대한 자격 기준을 성폭력관련 법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자격 기준을 마련하여 교육 강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.